

강원도립대학교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9-03-05 규정 제513호

(개정) 2019-10-02 규정 제534호

(개정) 2020-07-15 규정 제5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교육부 혁신지원사업’(이하 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에 근거한다.

제3조(운영체계) 대학은 혁신지원사업의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총장 직속의 ‘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사업전담 조직인 ‘사업단’을 두며, 별도의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제4조(재정운영) 혁신지원사업의 수입금은 국고지원금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의 별도 계정으로 관리·운영한다.

제5조(적용범위) 본 대학은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2장 사업추진위원회

제6조(구성) ① 혁신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② 총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내외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교학처장, 기획홍보처장, 산학협력단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획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
2. 사업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3.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4. 자체평가 결과 심의
5. 예·결산을 포함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혁신지원사업의 총 운영기간인 3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소집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사업단

제10조(구성) ① 혁신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사업단’을 신설하며, 그 산하에 ‘교육혁신팀’, ‘산학협력혁신팀’, ‘기타사업혁신팀’, ‘성과관리팀’, ‘회계지원팀, 운영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9.10.02.>

② 총장은 학내 전임교원을 사업단장으로 임명하고,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사업결과 보고 등
5. 사업실적 성과 공유 및 홍보

제11조(교육혁신팀) ① 총장은 학내 전임교원을 팀장으로 임명하며, 팀장은 소관분야 프로그램 계획수립·운영, 예산편성·운영 등을 총괄한다.

② 교육혁신팀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육의 질관리 체계 고도화, 교수학습역량 개선, 취·창업 지원, 학생학습역량지원 등 교육분야에 대한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한다.

제12조(산학협력혁신팀) ①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을 산학협력혁신팀장으로 임명하며, 팀장은 소관분야 프로그램 계획수립·운영, 예산편성·운영 등을 총괄한다.

② 산학협력혁신팀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육성 및 기업연계 등에 관한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한다.

제13조(기타사업혁신팀) ① 총장은 학내 전임교원을 팀장으로 임명하며, 팀장은 소관분야 프로그램 계획수립·운영, 예산편성·운영 등을 총괄한다.

② 기타사업혁신팀은 지역사회 협력·기여·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운영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제14조(성과관리팀) ① 혁신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팀을 두며, 기획홍보처 기획홍보팀장을 성과관리팀장으로 임명한다.

② 성과관리팀은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과정의 조정 및 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및 사업실적 보고, 성과지표 관리 및 성과평가, 사업성과 공유 등 사업단장의 주요업무를 보좌하여 혁신지원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제15조(회계지원팀) ① 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산학협력단에 회계지원팀을 설치하고, 산학관리팀장을 회계지원팀장으로 임명한다.

② 회계지원팀은 혁신지원사업비의 예산집행·결산을 주요 업무로 한다.

제15조의1(운영지원팀) ① 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혁신지원사업단에 운영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에서 운영지원팀장을 임명한다. ② 운영지원팀은 혁신지원사업 전체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비 관리 지원, 행정적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개정 2019.10.02.>

제4장 자체평가

제16조(자체평가) ① 사업단장은 혁신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연차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체계적인 사업 분야별 자체평가를 위해 독립적 기구인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총장은 10인 이내의 학내외 위원을 위촉한다. 단, 위원 구성은 교원, 직원, 재학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매년 사업단이 제출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사업추진위원회는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단 내 팀별 지원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기타

제17조(전담인력) 혁신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2019. 3.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

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46호, 2020. 07. 15.)

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